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646
----------	-------

발의연월일 : 2026. 4. 27.

발 의 자 : 이성권 · 조은희 · 강명구
김용태 · 이종욱 · 이현승
신성범 · 정성국 · 김 건
서지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 및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최근 경북 영덕 소재 풍력발전기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그 원인으로 현행법에 풍력발전기를 포함한 고정식 고소작업대가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별도의 화재안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점이 지적됨.

이에 고정식 고소작업대를 특정소방대상물에 열거하고 이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을 성능위주로 설계하도록 하며, 관련 화재안전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고정식 고소 작업대에서의 화재 및 이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신설 등).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대통령령으로”를 “풍력발전기를 포함하는 고정식 고소(高所)작업대 등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고정식 고소작업대에 대한 소방시설의 설치 등) ① 고정식 고소작업대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성능 위주설계를 하여야 한다.

② 고정식 고소작업대에 대한 화재안전기준을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2. (생략)</p> <p>3. “특정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등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것을 말한다.</p> <p>4. ~ 7. (생략)</p> <p>② (생략)</p> <p><u><신설></u></p>	<p>제2조(정의) ①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 ----- ----- ----- ----- -----<u>풍력발전기를 포함</u> <u>하는 고정식 고소(高所)작업</u> <u>대 등 대통령령으로</u>----- -----.</p> <p>4. ~ 7.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u>제12조의2(고정식 고소작업대에</u> <u>대한 소방시설의 설치 등) ①</u> <u>고정식 고소작업대에 소방시설</u> <u>을 설치하려는 자는 제8조제1</u> <u>항에 따른 성능위주설계를 하</u> <u>여야 한다.</u></p> <p><u>② 고정식 고소작업대에 대한</u> <u>화재안전기준을 별도로 정한다.</u></p>